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처벌 근거 마련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59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등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명시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등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을 의제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를 삭제하고,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61조의2 신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 <u>형법</u> 」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신설></u>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u>형법</u>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 -----. <u>제61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현행	개정안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63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협회의 사업은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있음.¹⁾

-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음.²⁾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 현행법 제61조³⁾에 따르면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⁴⁾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⁵⁾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을 의제하고 있으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범위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에 관한 죄’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4. 제26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제43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6.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 공급 및 재고관리
 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수납(收納)
-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현행법에서는 비밀누설 외에 비밀을 도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 이에 개정안은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단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밀을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제재수단 강화를 통해 직무상 비밀누설 및 도용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협회의 업무 중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업무 등의 경우 비공개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자료의 접근과 취득이 가능한 바 높은 공적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비밀유지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만, 직무상 비밀누설행위 처벌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협회의 임직원이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가

6) 비밀의 도용은 비밀을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에서는 비밀의 도용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고,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현행법과 개정안의 최고 법정형 수준을 비교할 때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비밀의 도용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임직원등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정하고,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를 포함한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아울러, 누설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입법례가 각각 있음.

[유사입법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제 하는 경우]

법률명	구분	조항 및 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비밀유지의무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명	구분	조항 및 내용
	벌칙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비밀유지의무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품안전 기본법	비밀유지의무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사업 현황**

□ '2024년 위탁사업 현황

○ 총 사업금액: 5,13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 산	비 고
예산사업	기본수로측량 품질 관리	1,532	
	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	1,700	
	국가해양관측망 (조위·해양관측소) 유지 관리	1,100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400	
	해양정보간행물 (항해용 간행물) 품질 관리	400	
비예산사업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배포	-	수수료 사업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	수수료 사업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	-	수수료 사업